

Q1. 급여 항목별로 정산처리되는 기준일이 언제인가요?

A. [기준급·역량급·급식통근비] 당월 1일 ~ 말일분에 대해 당월 지급

[초과근무수당·초과근무가산금·휴일수당] 전월 1일 ~ 말일분에 대해 당월 지급

Q2. 급여명세서 소급분에 급여감액이 되는 경우는 어떤때에 해당되나요?

A. 무급휴가(보건휴가, 가족돌봄휴가)를 사용했을 경우 급여가 감액 됩니다.

※ 감액 시점: 급여처리마감일 전 휴가입력의 경우 당월 감액, 이후 입력 시 차월 감액

Q3. 유급휴직의 경우 어떠한 급여항목이 지급되나요?

A. • 창업지원 휴직: 월기준급, 월역량급 전액 지급. (단, 최초 1년에 限)

• 리프레시 휴직: 월기준급과 월역량급의 80% 지급

• 직권휴직(질병): 월기준급, 월역량급 전액 지급

Q4. 급식통근비는 어떻게 산정 되나요?

A. 당월 근무일수만큼 지급하되, 전월에 휴가·국내 출장(시내 감독 및 일일출장 제외) 등이 있는 경우 당월에 차감됩니다. 예를 들어 당월 달력상 근무일수가 22일이고 전월 휴가 2일과 시외출장 1일이 있었을 경우, 당월 급식통근비는 총 19일치가 지급됩니다.

Q5. 현장근무자지만 초과근무 가산금 지급이 안되었는데 왜그런가요?

A. 현장근무자 중 전주상 또는 지하에서 케이블 포설 및 선로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초과근무 가산금 지급 대상입니다(단, 월 13일 이상 근무자 限). 근무표 입력을 누락하여 미지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